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22

발의연월일: 2024. 9. 24.

발 의 자: 허성무·이병진·허종식

이기헌 • 위성곤 • 채현일

권향엽 · 정진욱 · 박해철

윤건영 · 임미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에 대하여 서민 금융진흥원에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미사용잔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현행법상 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이익으로 모두 귀속되고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도 휴면예금과 같이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연 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의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및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40조 및 제44조 등).

법률 제 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휴면선불충전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가 발행한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에 기록된 금액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 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 한 자
- 나.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
- 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제24조제1항제12호 중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를 "예탁결제원 또는 선불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로 한다. 제4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휴면선불충전금의 경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 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선불충전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무기명으로 발행되어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 단서 중 "과실이"를 "과실 또는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휴면선불충전금이"로 한다.

제44조제1항 단서 중 "과실을"을 "과실 또는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휴면선불충전금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면선불충전금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휴면예금등"이란 다음 각	3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신 설></u>	다. 휴면선불충전금: 「전자
	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
	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
	<u>자"라 한다)가 발행한 같</u>
	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에 기록된 금액 중에
	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
	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
	효가 완성된 금액
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란 소	4
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 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 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 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5. ~ 8. (생략)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 1. ~ 11. (생 략)
-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 또 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 에 출연한 휴면예금등의 관리 • 운용

당하는----.

- 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 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 구권을 상실한 자
- 나.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 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 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 한 자
- 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선 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에 대한 채권 또는 청 구권을 상실한 자

5. ~ 8. (현행과 같음)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

- 1. ~ 11. (현행과 같음)
- ---예탁결제원 또는 선불업자 사등"이라 한다)이 휴면계정 (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

다)가-----

13. ~ 16. (생략)

② ~ ④ (생 략)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생 략)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 설>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 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13.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현행과 같음)
②
1.•2. (현행과 같음)
3. 휴면선불충전금의 경우: 휴
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
국인등록번호, 휴면선불충전
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료. 다만, 선불전
자지급수단이 무기명으로 발
행되어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

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u>과실이</u> 출연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 등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관실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휴면선
불충전금이
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과실 또
는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휴면선불충전금을
<u>/ </u>
 ① /처레기 기·◊\
② (현행과 같음)